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요구권 신설〉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91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왕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8.
3. 회부연월일 : 2025.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협업 제품(이른바 ‘콜라보’)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 사례가 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상표법에는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용사용권자는 각종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됨.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곰표맥주’ 갈등이 대표 사례로 지적되었음. 전용사업권자는 콜라보 제품의 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과 아이디어를 투입했지만, 상표권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용사용권자의 영업 기밀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음. 이처럼 상표 공동 발전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가 계약 갱신 과정에서 정당한 대항권 없이 협상력의 불균형을 겪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표권자가 일정 요건 하에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갱신 거절 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갱신 요구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기존 조건

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상표 공동 발전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의 지위를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협상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상표권자가 일정 요건 하에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갱신 거절 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갱신 요구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기존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95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5조의2(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갱신) ①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용사용권자의 중대한 계약 불이행 등으로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경우 2.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전용사용권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상표권자가 계약 기간 중 해당 상표에 관한 영업의 지속을 중단하거나 영업방침을 변경하여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전용사용권 설정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상표권자는 총 계약기간 6년을 초과하는 전용사용권자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의 지위

	<u>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갱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u>④ 상표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갱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용사용권자에게 거절의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 <u>⑤ 상표권자가 제4항에 따른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전용사용권자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용사용권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	---

상표 전용사용권이란 「상표법」 제95조¹⁾에 따라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함.

현행 「상표법」에는 전용사용권 설정계약 갱신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맡기고 있는데,

-
- 1) 「상표법」 제95조(전용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 ④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⑤ 전용사용권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 ⑥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⑦ 전용사용권의 이전 및 공유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최근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의 ‘곰표 밀맥주’ 상표 전용사용권에 대한 분쟁²⁾ 과정에서 협상력이 상이한 주체 간 간 상표 전용사용권 갱신 계약의 불공정성 문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된 이후,

협업 제품(이른바 ‘콜라보’)과 같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에 있어 전용사용권자가 단기의 계약 기간 만료 후 불합리한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 종료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로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에 따라 전용사용권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여 최소 6년의 계약 유지 기간을 보장하게 되면, 특히 전용사용권자가 기업 규모나 협상 지위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경우 협상력을 보완하여 대등한 협상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된 사례는 ① 주택부동산 임대차 계약, ② 상가부동산 임대차 계약, ③ 프랜차이즈 계약 등이 있는데,

2) 대한제분(중견기업)과 세븐브로이(중소기업)은 곰표밀맥주 상표 전용사용권 사용 계약 기간(3년) 만료 후, 재계약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

현행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비교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도입 시기	2020.7.	2013.8.	2007.8.
도입 취지, 배경	주거 안정 보장, 주거난 해소	영업기반보호, 젠트리피케이션	가맹점 투자회수 보장, 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
관련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계약 보장 기간	4년	10년	10년
거절 사유	- 2기 이상 차임 연체 - 임대인 직접 거주 - 무단전대 등	- 차임 3기 연체 - 건물 철거·재건축 - 무단전대 등	- 가맹금 지급의무 위반 - 통상적 계약조건 거절 - 중요 영업방침 위반

이러한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에 있어 상대방의 협상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위인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계약상 지위를 일괄적으로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는 반면,

최근 3년간 상표 전용사용권 계약 당사자 유형 및 계약기간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계약기간(N, 년)	건수(비중)
대기업 (26)	대기업(23)	N<2	4(17.4%)
		2≤N<5	0
		5≤N<9	6(26.1%)
		9≤N	13(56.5%)
	중소기업(3)	9≤N	3(100%)
중견· 중소기업 (144)	중견·중소기업(131)	N<2	25(19.1%)
		2≤N<5	38(29.0%)
		5≤N<9	35(26.7%)
		9≤N	33(25.2%)
	내국개인(13)	N<2	1(7.7%)
		2≤N<5	1(7.7%)
		5≤N<9	11(84.6%)

자료: 지식재산처

이와 달리 최근 3년간 상표 전용사용권 계약 현황을 보면 대기업-대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과 같이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기업 간 계약도 상당수 있어서 다른 계약갱신요구권에 비해 계약상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해줄 필요성이 다소 낮은 측면이 있고³⁾,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 기간이 5년이 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6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TRIPS 협정⁴⁾ 제31조⁵⁾ 및 제21조⁶⁾에 따르면, 상표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 갱신 강제는 TRIPS 제21조에서 금지하는 강제사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협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수정은 「헌법」 또는 「민법」이 보장하

3) 지식재산청은 최근 3년간 특허청에 접수된 상표 전용사용권 관련 민원은 없다고 설명함.

4) TRIPS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줄임말로써, WTO협정의 ‘부속서 1다’로 규정되어 있고, WTO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도 자동 가입함.

5) **TRIPS 제31조(권리자의 승인 없는 기타 사용)** 회원국의 법률이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3자에 의한 사용을 포함하여 권리자의 승인없이 특허대상의 다른 사용(Re.7)을 허용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이 준수된다.

Remark 7 (생 략)

6) **TRIPS 제21조(사용권 설정과 양도)** 회원국은 상표의 사용권 설정과 양도에 관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상표의 강제실시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등록상표권자는 그 상표가 속하는 영업의 이전과 함께 또는 그 상표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양해된다.

는 중요한 기본권⁷⁾에 대한 제한인 반면, 일단 제도를 시행한 뒤에는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적 민주화⁸⁾의 요구와 맞물려 다시 이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지식재산처는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에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수요가 파악되고 있지 않고, 계약 자유의 원칙 위배 및 TRIPS 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 개정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대한변리사회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분쟁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7) “헌법 제10조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의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들어있고,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의 자유가 파생된다. 계약의 자유란 계약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를 말한다. 또한 헌법 제23조 제1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서, 그 기초가 되는 사유재산제도와 경제에 관한 사적 자치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6.7.27. 2005헌바19]

8)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 제10조에 포함된 계약의 자유,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또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등 경제에 관한 공익을 위하여 법률상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법률상 제한을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헌법재판소, 2006.7.27. 2005헌바19]

문 의 처
02)6788-5458

관련 조문

계약갱신요구권 입법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③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